

의사규칙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6년 10월 23일 개정

2006년 10월 27일 개정

2011년 10월 28일 개정

2015년 2월 15일 개정

| 제목 | 규칙 | 페이지 |
|----------------------|------------|---------|
| 회원국 대표의 변동 사항..... | 1..... | 102 |
| 연락관..... | 2..... | 102 |
| 회의..... | 3..... | 102 |
| 자문위원, 전문가 및 참관인..... | 4-5..... | 103 |
| 회의 절차..... | 6..... | 103 |
| 투표..... | 7-8..... | 103-104 |
| 소위원회..... | 9-13..... | 104 |
| 임원..... | 14-18..... | 105 |
| 사무국..... | 19-22..... | 106-107 |
| 의제..... | 23-24..... | 107 |
| 간행물..... | 25..... | 107 |
| 의사규칙의 개정..... | 26..... | 107 |

의사규칙

의사규칙

1992년 2월 11일에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자원보존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7항에는 협약의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3인 이하의 대표를 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5항에는 위원회는 의사규칙을 채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 포함된 모든 의사 관련 조항은 이 의사규칙에서 반복하지 않는다.

회원국 대표의 변동 사항

1. 각 당사자는 교체대표의 임명을 포함하여 자국 대표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교체 대표들은 협약 당사국들이 임명한 대표의 부재 시에 위원회 회의의 구성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당사국들이 임명한 대표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연락관

2. 각 당사자는 회의 사이의 기간 동안 자국을 대신하여 연락을 담당할 주 책임자를 임명한다. 그러나, 그러한 연락관을 임명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들과 직접 연락을 할 수 있다. 연락관의 임명과 관련된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회의

3. 위원회는 협약 제8조 12항에 따라 정기적인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기타 위원회 회의는 당사국들 과반수의 요구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시기 및 장소는 의장이 당사국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 전문가 및 참관인

4. 각 당사자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동 당사자가 선택한 자문위원, 전문가 및 통역을 동반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동반자의 명단을 회의시 또는 개시 전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는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지 아니한 전문가나 자문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
5.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에 어떠한 정부간 또는 여타 기구들을 위원회의 특정한 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하기 위하여 초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그러한 회의에 손님 또는 옵서버로서 참가할 개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초청은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개시될 수 있다. 결정은 모든 당사국의 총의로 결정된다.
- 5a. 위원회의 회의에 스스로 옵서버로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어느 기구는 참가의사를 표시한 신청서를 적어도 회의개최 90일전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다. 사무국장은 그러한 신청서들을 적어도 연례회의 60일전에 당사자들의 검토를 위하여 당사자들에 보낸다. 그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적어도 연례회의 30일전에 모든 당사자들간 총의로 결정된다.

회의 절차

6. 위원회에서는 의장이나 소위원회 의장이 허가하고 다른 대표들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할 수 없다.

투표

7. 협약 제8조 10항에 규정된 투표는 거수, 호명, 또는 무기명투표 중에서 의장이나 소위원회 의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소위원회에서의 투표에도 같은 절차를 적용한다. 위원회에서는 각 당사자의 대표들 중 한 사람 또는 대리대표가 투표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는 대표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지명된 자문위원이 투표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는 우편이나 다른 통신 방법을 사용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한 투표는 각 당사자의 연락관이나 수석대표가 위원회에 송부한다.

소위원회

9. 재정행정소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 1인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부사무국장 및 행정관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재정과 행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0. 이 집행소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 1인과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및 부사무국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이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1. 과학연구통계소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대표 1인과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장 및 부사무국장은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과학 연구 및 통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위원회가 위임하는 다른 문제들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에 관한 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러한 소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13. 각 당사자는 소위원회 참석자를 선정하며, 그러한 선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위원회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임원

14. 위원회의 임원은 협약 제8조 11항에 따라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서 연례회의를 폐회할 때 시작되어 그 후 두 번째 연례회의가 폐회될 때 종료되며, 당사자들 사이의 윤번제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15. 위원회는 의사규칙 제9, 10 및 11조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의 의장을 선임하되, 당사국들 사이에 윤번제의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다. 선임된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16.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직위가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공석이 되는 경우, 그러한 공석은 남은 임기 동안 전임자가 소속되었던 당사자가 선임한 대표로 충원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17. 위원회 의장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의사규칙 제3조에 따라 연례회의와 기타 회의를 소집
 - (b)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
 - (c)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의사 진행상의 모든 문제를 판정, 단 모든 당사자는 의장의 판정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청할 권리를 보유한다.
 - (d) 투표를 요청하고 위원회에 투표 결과를 발표
 - (e) 의사규칙 제23조가 요구하는 의제 초안을 사무국장장과 협의하여 결정
 - (f)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조사 및 조사 결과에 관한 연례보고서에 서명하고, 그 보고서를 협약 당사자, 대표 및 기타 관련자에게 송부
 - (g) 위원회를 대표하여 협약 당사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에 서명
 - (h) 필요한 경우, 협약 당사자들로부터 문서를 접수하여 다른 당사국들에게 전송
 - (i) 위원회의 업무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일반적인 결정을 하고 사무국장에게 이행을 지시 (특히 위원회 회기 사이의 기간 동안)
 - (j)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요청된 다른 조치를 수행
18. 의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거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 절차 제16조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거나, 의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국

의사규칙

19. 사무국장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 (a) 위원회가 수립한 지침과 예산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 직책에 직원을 임명
- (b) 위원회가 부여한 사무국의 일반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을 수행
- (c) 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수행
- (d)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모든 자금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재정규칙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을 수령 및 분배
- (e) 예산과 관련하여 재정규칙에 규정된 모든 직무를 수행
- (f)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의사규칙 제17(f)가 요구하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
- (g) 모든 위원회 회의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당사국들에게 사본을 신속하게 송부
- (h) 소위원회와 의사규칙 제12조에 의해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위원회의 회의록 서기 역할을 수행
- (i)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실에 대한 문의를 포함하는 일상적이고 잡다한 사항, 위원회가 이전에 결정한 정책에 대한 문의, 그리고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향후 프로그램들에 대한 회신 업무를 수행
- (j) 위원회의 공식 파일과 조치 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
- (k) 협약 제7조 2항과 3항에 따라, 협약수역과 인접 수역 (관련 담수계 포함)에서 어획된 모든 소하성어류에 관한 어획정보와 협약 수역과 인접 수역에 대해 위원회가 지정한 생태학적 관련 종에 관한 어획정보, 그리고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의 작성과 발행을 감독
- (l)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간행물의 작성과 발행을 감독
- (m)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임원의 직무 수행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의장이 위임한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
- (n) 위원회나 의장이 지시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
- (o)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사무국장과 행정관에게 권한을 위임

- 20. 부사무국장은 사무국장이 의사규칙 제19조에 규정된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 21. 사무국장의 직위가 공석이 되거나 사무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거나 사무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부사무국장이 사무국장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 2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원 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의제

- 23. 위원회 회의의 의제 초안은 사무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당사국들의 검토, 의견 제시 및 수정을 위해 늦어도 회의 9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의제 초안에 대한 의견과 수정 사항을 반영한 후에, 사무국장은 잠정 의제를 작성하여 회의 90일 이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정 의제는 필요한 경우 채택 시 의사규칙 제24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정할 수 있다.
- 24. 의사규칙 및 재정규칙에 대한 개정 또는 협약 제9조 11 항에 의한 결정 및 권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 또는 권고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항을 협의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검토를 만장일치로 수락할 회의가 열리기 60일 이전에 배포된 잠정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행물

- 25. 위원회는 의사규칙 제17 (f)조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을 위해 작성한 연례보고서와 의사규칙 제19 (k)조에 따라 소하성여족자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발행하고, 이외에도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보고서를 수시로 발행한다.

의사규칙의 개정

- 26. 본 의사규칙은 협약의 규정과 상치되지 않는 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